

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의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「사업주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」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05. 29.

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통 영 지 청



1. 건 명: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성 명)	사업장 관리번호 (대표자 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공시송달 사유
주식회사 에이치비 (박○호)	568-88-02458-0 (1979. 02. 05.)	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(이하 생략)	이직확인서 제출 요청	· 안○식의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· 관련 근거 법령 안내 · 미제출 시 과태료 고지 · 「이직확인서」 서식 첨부	동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

4. 공 고 기 간: 2026. 05. 29. ~ 2026. 06. 12.(15일간)

5. 문 의: 통영고용복지⁺센터 김은정 주무관 (☎ 055-650-1824), (FAX)0503-8803-0590